

항소심 판결 요지

판결 선고 2015 년 7 월 29 일

2014 년 (【네】) 제 XXXX 호 각 손해배상,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원심 도쿄(東京)지방법원

2009 년 (【와】) 제 XXXXX 호 (제 1 사건)

2009 년 (【와】) 제 XXXXX 호 (제 2 사건)

2011 년 (【와】) 제 XXXXX 호 (제 3 사건)

구두변론 종결일 2015 년 4 월 27 일

도쿄(東京)고등재판소 제 1 민사부

재판장 재판관 이시이 타다오(石井忠雄)

재판관 다나카 히데유키(田中秀幸)

재판관 오오타케 유우코(大竹優子)

주문 1. 본건 각 항소를 기각(파기)한다

2. 항소비용은 (이하, 생략)

(주문의 의미)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도쿄(東京)지방법원의 모든 결론을 지지하였다는 의미이다.

(도쿄(東京)지방법원 원판결 내용)

1. 성희롱(Sexual harassment) 피해자 A~D 에 대하여 330 만엔에서 440 만엔의 배상책임을 변재창 개인과 교단에 인정했다.

2. 【Power harassment=직장 내 부당 권력에 의한 괴롭힘】 피해자 E 에 대해서는

피고 변재창, 간부 교역자 및 교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3. 변재창 개인과 교단이 제기한 성희롱 피해자 A~D, 【Power harassment】 피해자 E, 지원자 4 명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기인한 배상 청구 및 사죄광고 게재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 내용)

1. 변재창과 교단은 이하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1) 성희롱 피해자 A~D 에 대하여 330 만엔에서 440 만엔의 배상책임을 변재창 개인과 교단에 인정한 점

- (2) 변재창 개인과 교단이 제기한 성희롱 피해자 A~D, 【Power harassment】 피해자 E, 지원자 4 명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기초한 배상 청구 및 사죄광고 게재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점

2. 【Power harassment】 피해자 E 는 【Power harassment】 피해에 대하여 피고 변재창, 간부 교역자 및 교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유 요지

원판결을 지지하고 있기에, 대부분은 원판결에 기록된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항소심이 원판결의 판결이유를 변경한 것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음(원판결 오자 등의 개정 부분에 대한 지적은 생략함).

제 1 성희롱 소송 (제 1 사건)

1. 2008 년 12 월 17 일 피고 변재창과 신도들 간의 대화에 대해서

변재창이 이 당시 신도들에게 한 발언 중, 변재창이 신도들에 대하여 “예를 들면 말이죠, 또 똑같은 ‘아이 러브 유’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최고의 애정표

현이고, 또 어떤 경우에 이것은 거의 치한이예요. 상황에 따라서는”이라는 발언도 있었음을 추가하여 인정하였다.

2. 변재창이 성희롱 피해자 C에게 작성시킨 서약서의 평가에 대해서

변재창이 성희롱 피해자 C에게 작성시킨 서약서의 평가에 대해서, 변재창과 교단 측은 이 서약서를 근거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원판결은 “피고교단에서는 피고 변재창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가르치며, 영적지도자가 실패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입밖에 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었기에, 원고 C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하여 서약서가 있어도 본건에서는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하고 있었다.

항소심 판결은 원판결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이 서약서에 대해 “오히려 당시 1심 원고 C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던 것을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원고 C에게 서약서를 작성시킨 것은 2008년 5월경부터 교단 내에서 1심 피고 변재창의 성희롱 행위 등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1심 피고 변재창이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상태에 있던 1심 원고 C에게 압박을 하였다고 짐작시키는 대목이다”라는 판단을 추가하였다.

3. 4명의 피해자에 대한 변재창의 성희롱 행위의 의도 및 동기에 대해서

원판결은 변재창의 성희롱 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라는 기술을 판결문 중에 2번 반복하고 있었다.

항소심 판결은 2번 반복되는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라는 부분 중, 첫 번째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를 ‘1심 피고교단의 주임목사이자 최고위 영적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도하고’로 변경하고, 본건의 가해 의도 및 동기를 보다 상세하게 인정하였다.

이로써 원판결은 ‘피고 변재창은 1심 피고교단의 주임목사이자 최고위 영적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럼 지도하고, 원고(성희롱 피해자 ABCD 모두)가 피고 변재창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심리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성적 의도에 기인하여 각 성희롱 행위에 이르렀다'로 변경되었다.

4. 불법행위 내용의 상세화

원판결은 인정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고 하고 있었다.

항소심 판결은 불법행위 내용을 상세화하여, '1 심 원고(ABCD 모두)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1 심 피고 변재창의 행위는 1 심 원고(ABCD 모두)의 성적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며, 1 심 원고(ABCD 모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고 하였다.

5. 피해자 C의 준강간 피해에 대해서

원판결은 피해자 C의 준강간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 C가 주장한 특정 피해 일시와는 다른 일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그 다른 일시에 준강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피고 측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었다.

항소심 판결은 상기 원판결의 판례 부분을 전부 변경하고, '이상 검토한 결과, 1 심 원고 C의 진술 중 핵심 부분은 신용할 수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2007년 2월 17일경(같은 날 또는 전후 수일)으로 특정하여 본건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본건 증거 상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제 2 【Power harassment】 소송 (제 2 사건)

소송 기각(파기) 이유로서 상세한 이유를 지적하지 않고 '증거 상 1 심 피고들의 원판결 인정 행위와 1 심 원고 E의 자율신경 실조증, 정신분열증의 발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추가하였다.

원판결은 인정 행위의 불법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에 더해 인정 행위와 질환 발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이유를 좀 더 상세화하고 있다.

제 3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죄광고 게재 청구소송 (제 3 사건)

고소, 고발, 기타 범죄행위의 신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되는 경우의 규범을 원판결보다 다소 상세화시켜 ‘고소, 고발, 기타 범죄행위의 신고는 그것을 받은 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잃게할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 고발, 기타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경우, 혹은 범죄 혐의를 거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위에 ‘피해자 C 의 간음 피해는 본건 증거 상 인정이 곤란하지만, 피해자 C 의 진술 중 핵심 부분은 신용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피해자 C 가 범죄일시를 특정하여 고소하는 경위를 미루어보아, 피해자 C 가 그 내용을 허위임을 알면서도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그 피해일시를 2007년 2월 17일이라고 특정하여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상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기 범죄사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 C 가 같은 날에 간음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 피해자 C 가 상기 고소를 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C 가 본건 간음 행위를 쓰쿠바(つくば)중앙경찰서에 범죄행위로 신고하고,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1심 피고 변재창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 C 는 좀 더 상세화된 상기의 규범에 의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상